

고 발 장

고발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공동대표 : 김유승·권혜진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3층
 - 전화번호 : 02-2039-8361
 - 담당자 :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고발인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이번 사안과 같은 정보은폐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할 책무가 있음

피고발인

-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
- 성명불상(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공기록물 폐기 및 은닉을 저지른 관계 공무원들)

고발대상 범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기록물 보호·관리 의무 위반), 제19조의2(무단 은닉), 제27조(폐기 절차 미준수) 및 제51조 제3호(기록물 고의 손상)

*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실관계가 100%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사를 통해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을 저지른 자를 밝혀서 피고발인을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들의 지위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사령관 등의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부대와 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책임을 가집니다.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명령과 결정이 사령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모장: 사령관을 보좌하며 본부 참모부의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합니다. 또한,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령관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기록물 폐기나 은닉 시도가 참모부 내에서 실행되었다면, 이를 조정하거나 감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감찰실장: 본부에 소속된 군인 및 관련 인원 에 대한 감사, 검열, 직무 점검, 비위행위 조사 및 처리 등을 수행하며, 본부 업무의 책임자로 활동합니다. 문서 폐기 또는 은닉과 관련한 조사 및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명불상(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공기록물 폐기 및 은닉을 저지른 관계 공무원들) : 기록물 폐기나 은닉을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담당자

이러한 직책에 따라 피고발인들은 각각 기록물 폐기 지시, 은닉 시도,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점에서 직무상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2. 피고발인의 혐의

박선원 국회의원이 12월 6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한 보직대기 발령을 내고 있다"는 첩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내부 고발을 억제하고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여러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불법성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시도하여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19조의2 위반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은닉하려 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법 제27조 위반입니다.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정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넷째, 같은 법 제51조 제3호 위반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기록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려 하였으며, 이는 기록물을 고의로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록물 폐기를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조직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조직적 폐기·은닉 시도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및 관련자들의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 시도는 단순한 행정적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내란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한 시도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수사권 범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 시도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넘어, 군 조직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나아가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라는 공적 책무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증거자료

- 경향신문 2024.12.06 방첩사 ‘친위쿠데타’문건 파기 의혹에 국가기록원, “폐기 시 처벌”공문 발송(<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61606001>)
- 한겨레 2024.12.06 ‘비상계엄 증거 파기’ 의혹…국가기록원, 긴급폐기금지조치 적용 검토(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449.html)
- MBC 2024. 12. 07 “여인형, 계엄문건 파기 지시”서둘러 증거 인멸? ‘파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4417_36431.html)

첨부자료

-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2) 증거자료(기사 출력물)

2024.12.11

고발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

국가수사본부 귀중